
 문화체육관광부		<h1>보도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21.(수)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이선영(044-203-3211)	담당자	사무관 이해영(044-203-3218)		

신임 제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임명장 전수 - 7. 21. 첫 번째 이사회에서 김주언 이사장 호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021년 7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뉴스통신진흥회 신임 이사진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임명 일자는 7월 16일이다.(임기: 2021. 7. 16.~2024. 7. 15.)



신임 이사들은 ▲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임홍식 전 엠비시 시애틀아이(MBC C&I) 대표이사, ▲ 전종구 한국체육언론인회 이사, ▲ 조복래 전 연합뉴스 콘텐츠융합 상무이사 등 총 7명이다.(이름 가나다순)

아울러 신임 이사들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에 따라 첫 번째 이사회를 열고 김주언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황희 장관은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진흥회 이사회에서 뉴스통신을 진흥하고, 연합뉴스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 붙임 1. 뉴스통신진흥회 제6기 이사 명단
2. 뉴스통신진흥회의 업무 및 임원 관련 규정

  공공누리 공공서적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이해영(☎ 044-203-3218), 주무관 강건(☎ 044-203-321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뉴스통신진흥회 제6기 이사 명단

* 가나다 순서임

성명	연령·학력	주요경력
 강홍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6년생 • 연세대 행정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기자, 논설위원, 사회1부장, 사회에디터('92~'20) •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자문위원회 위원('14) •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위원('20~현재) •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20. 3~현재)
 김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생 • 이화여대 법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호사회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03~현재)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 대책팀장('03~'13) •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18~현재) • 제5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20. 9. 8.~현재) • 민들레 법률사무소 변호사('02~현재)
 김주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년생 • 서울대 화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기자, 전국부 차장, 수도권 본부장('80~'98) • 한국기자협회 회장('92~'94), 기획위원장('98) •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장('05)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12~'15) •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07~현재)
 이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년생 •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위원('15~'16) •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17) •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위원('17)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03~현재)
 임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생 • 서울대 중어중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기자, 보도국 사회부장, 보도국 에디터, 부국장, 국장('84~'16) • MBC C&I대표이사 ('18~'21) • 이화여대 윤세영저널리즘스쿨 교수('21~현재)
 전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생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기자, 싱가포르 특파원, 중부사업본부 본부장('77~'06) • 중앙일보 제4대 노조위원장('90~'91) •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 대표이사·사장('12~'13) • 한국체육언론인회 이사('12~현재)
 조복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생 • 서울대 정치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기자,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장, 상무이사('88~'18) • 한국교통대학교 전문경력 교수('18~'21)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9. 생략)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⑧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 ⑤ 생략)